



문서번호	보건위생과-767		
결재일자	2015.1.16.		
공개여부	부분공개(5)		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24호		

7	지방행정주사	보건행정팀장	보건위생과장	보건소장	부구청장
조유현		박진수	정주섭	김경희	01/16 이비오
협	총무과장		호		
조	건강관리과장 김		심		
	인사팀장 송재		훈		

- 일반 임기제공무원 (의료기술 서기) -

근 무 기 간 연 장 계 획



성 동 구

(보건위생과)

사 전 검토사항

::: 해당사항에 ☑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			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□ 공약(약속)사업 □ 계속사업 ☑ 인센티브/공모사업 □			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● 구 민: 유□() 무☑ ● 전 문 가: 유□() 무☑ ● 이해당사자: 유☑() 무□			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 리 □ 환경영향 □ 안 전 □ 유지비용 □ 바른 공공언어 ☑ 성 인 지 □ 취약계층 □ 장 애 인 □ 디 자 인 □ 갈등발생 요인 □			
타자원 활용	• 중앙부처: 유□() 무☑ • 서울시: 유□() 무☑ • 기업: 유□() 무☑ • 민간단체: 유□() 무☑			
언 론 홍 보 계 획	기획보도 □ 보도자료 □ SDTV □ 성동뉴스레터 □ 성동구소식지 □ 기고 문 □ 전자행정서비스 □ SNS□ 기타(리플릿 등) □ 없음 ☑			
● 홍 보 제 목 :				
● 중점 홍보사항				

- 일반 임기제공무원 (의료기술 서기) -

근 무 기 간 연 장 계 획

우리구 보건소에서 운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, 그동안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할 경우 근무기간(2년 이내)을 여장하여 운동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추 진 개 요

1 관련근거
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, 제17조 및 제21조의3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(안전행정부 예규 제109호, 2014.09.23.)

② 근무기간 만료대상자

- 대상인원: 임기제 8급 1명 (운동처방사)
- 인적사항

성 명	직급	소속부서	사업분야	계약기간
이유미	의료기술서기	건강관리과	건강생활을 위한	2013. 3. 1.
(82년생)	(운동처방사)		운동사업 추진	~ 2015. 2. 28.

③ 보건소 임기제 현황

(단위: 명)

구 분	계	5급	6급	8급	
정 원	14	7	1	6	
현 원	14	7 (의사6,치과의사1)	1 (한의사)	6 (영양사1, 물리치료사1, 간호사1, 치과위생사1, 운동처방사2)	

Ⅱ 연장기준 및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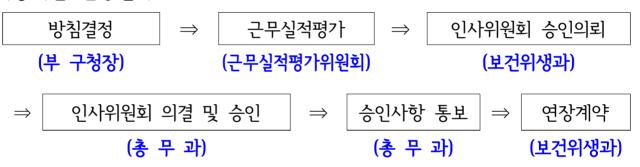
① 연장기준

- 근무실적 평가 최종결과 5개 등급 중 C급(미흡) 이상인 경우 계약연장 가능
- C등급(미흡) 봉급 삭감, D등급(부진) 연장 불가

2 연장기간

○ 실적이 우수하여 계약연장이 타당하다고 결정될 경우 2년 연장

※ 채용기간 연장절차



Ⅲ 근무실적 평가

□ 성과목표 및 실적평가

- 평가기준일: 2014. 12. 31.
- 평가대상 및 기간
 - 의료기술 서기 이유미, 2013. 3. 1. ~ 2014. 12. 31.
- 평가절차
 - 피 평가자 자기평가서 작성 ⇒ 평가자(보건소장)에게 제출 ⇒ 보건 소장 평가(1차) ⇒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종합평가(2차)
- 평가방법
 - 1차평가: 보건소 관련 과장 및 직원 의견수렴 후 보건소장 평가
 - 2차평가: 일반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

- 평가내용 및 배점
 - 성과목표계획서 및 성과목표평가서에 의거 평가
- 평가 기준
 - 목표 달성도 평가: 최종평가 평정점으로 등급 산출
 - ※ 최종 평정점 = 단위별 업무비중 x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목표달성도 평가 + 실적 가감점
 - 가감점 부여: 가감사유를 심사하여 부여결정
 - 평가 등급

S등급(탁월)	A등급(우수)	B등급(보통)	C등급(미흡)	D등급(부진)
95점이상	86점 이상 ~ 95미만	80점 이상 ~ 86점 미만	75점 이상 ~ 80점 미만	75점 미만
근무기간 연장 가능				계약해지

②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

○ 일 시: 2015. 1. 15.(목) 10:00

○ 장 소: 보건소장실

○ 심사위원: 3명 (위원장: 보건소장, 위원: 보건위생과장, 건강관리과장)

○ 안 건: 일반임기제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근무 성과계획 및 실적 평가

○ 평가결과: B등급 (평정점: 86점), 연장가능

③ 연장관련 인사위원회 승인 요청: 2015. 1월 말

④ 연장기간: 근무기간 만료 다음날로부터 2년이내

- 연장기간: 2015. 3. 1. ~ 2017. 2. 28. (2년)
 - 의료기술 서기 이유미: 최초계약 (2012, 03, 01.)
- 근무기간만 연장하는 사항이며, 보수는 2014년 연봉 책정액 유지
 - ※ 금번 연장으로 5년 근무상한에 해당되므로 추가 연장은 불가하며, 행정인력 필요 시 신규 채용공고 절차에 의함.

Ⅳ 행정사항

- 근무기간 연장승인(총무과): 2014. 1월중
- 근무기간 연장계약: 보건위생과

붙임: 성과계획서 및 성과목표평가서. 끝.